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3 쪽)

1. 명 칭 : PCA 배당 주식혼합 종류형 투자신탁 제H-1 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58756)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종 류 : 증권투자신탁, 혼합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공모형
4. 자산운용회사 : PCA 투자신탁운용(주)

II 투자정보 (본문 3~5 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투자신탁재산의 60%이하를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주식에 투자하며, 40%이하를 국공채 중심의 채권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투자전략	- 철저한 리서치에 근거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동시에 신용등급이 높은 국공채 중심의 채권에 투자하여 배당수익 및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과 함께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3. 주요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 및 채권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2등급으로 높은 수준임 - 따라서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과 동시에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pcaasset.co.kr)에서 확인가능

6.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 2007.11.20)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홍순모	34세	과장	3개	300억	연세대 경영 주식운용 (신영투신 6년6개월, PCA 투신 07.05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의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위 : %)

연도	최근 1년 2006.07.26 ~ 2007.07.25	설정일 이후 2006.07.26 ~ 2007.07.25
투자신탁	39.62	39.62
비교지수	33.57	33.57

※ 비교지수 : (KOSPI X 60%) + (유동성 X 40%)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5~8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클래스 A	클래스 C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 없음	제한없음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없음	납입금액의 1.0%	
	환매수수료 (90 일미만 환매시) ¹⁾	이익금의 70%	없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5%	연 0.5%
		판매회사보수	연 1.2%	연 0.7%
		기타보수	연 0.045%	연 0.045%
		보수합계	연 1.745%	연 1.245%
	기타비용	연 0.619%	연 0.619%	
총보수·비용비율 ²⁾		연 2.364%	연 1.864%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 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주식 매매차익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 5. 6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오후 시)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 입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자금납입 (3시 이전) 수익증권 매입 (D+1 기준가격적용)</p>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자금납입 (3시 이후)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격적용)</p>
환 매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p> <p>환매청구 (3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p>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p> <p>환매청구 (3시 이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p>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 -)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 _____ 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8. .

판매직원 _____ 서명 또는 (인)



투 자 설 명 서

PCA 배당 주식혼합 종류형 투자신탁 제H-1호

이 투자설명서는 PCA 배당 주식혼합 종류형 투자신탁 제H-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PCA 배당 주식혼합 종류형 투자신탁 제H-1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투자신탁명 | PCA 배당주식혼합 종류형 투자신탁 제 H-1 호 |
| 2. 자산운용회사명 | PCA 투자신탁운용(주) |
|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전화번호: 02-2126-3500 |
| 3.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전화번호 | 하나은행 ☎ 1588-1111
PCA생명 ☎ 1588-430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 | | |
|-----------------------------------|---|
| 4. 작성기준일 | 2008년 5월 6일 |
|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 판매회사 본·지점 및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abank.com , www.pcakorea.co.kr
www.pcaasset.co.kr, www.amak.or.kr |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 2. 신탁계약기간
- 3. 분류
- 4. 자산운용회사
-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 6. 수탁고 추이
-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 2. 주요 투자전략
- 3. 주요 투자위험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6. 운용전문인력
- 7. 투자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III. 수수료·보수, 과세

-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 1. 매입
- 2. 환매
- 3.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1. 투자전략
- 2. 투자위험
- 3. 투자대상
-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 4. 운용자산 규모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업무

III. 수탁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업무

V. 채권평가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 2. 잔여재산분배
-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4. 손해배상책임
- 5. 재판관할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2. 수시공시



제1부 당해 투자신탁의 기본 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PCA 배당 주식혼합 종류형 투자신탁 제H-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58756)
-클래스별 펀드코드 : 클래스A (58757), 클래스C (66493)
- 2. 신탁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3. 분류 증권간접투자기구, 혼합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 4. 자산운용회사 PCA투자신탁운용(주)
-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6.07.26 PCA 배당 주식혼합 종류형 투자신탁 제H-1호 설정
- 6. 수탁고 추이 수탁고 추이 (순자산가치 기준)

(단위 : 억원,%)

연도	현재 20070725	6개월전 20070125
수탁고금액	48	12
수탁고증가율	276.22	-

*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를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I.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신탁재산의 60% 이하를 철저한 리서치에 근거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주식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배당수익과 함께 시장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40%이하를 국공채 중심의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수익의 확보를 추구하는 혼합형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주요 투자전략
 - 주식운용전략
국내 주식 가운데 철저한 리서치에 근거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주식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배당수익과 함께 시장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 채권운용전략
국공채, 은행채 및 신용등급이 높은 유동성자산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금리변동 위험에서 중립적인 운용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매력도 분석에 의한 섹터별 자산배분 및 투자분석에 의한 반영수익 우위에 있는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으로는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 유동성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매연기 위험,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량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동시에 신용등급이 높은 국공채 중심의 채권에 투자를 함으로써 배당수익 및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과 함께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5 등급의 투자위험 가운데 2 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과 동시에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위험 등급	위험수준	상품유형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국내주식형, 해외 단일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2등급	높은 위험	인덱스형, 국내 및 해외주식혼합형 해외 복수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3등급	중간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혼합형, 파생상품형
4등급	낮은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형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전자공시 - 판매사 각 영업지점 및 운용사,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6.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 2007.11.20, 단위 : 억원, 개)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홍순모	34세	과장	3	300	연세대 경영 주식운용 (신영투신 6년6개월, PCA 투신 07.05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의 책임 운용 전문인력입니다.



상기 책임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현황

(단위 : %)

연도	최근 1년 2006.07.26 ~ 2007.07.25
투자신탁	39.62
비교지수	3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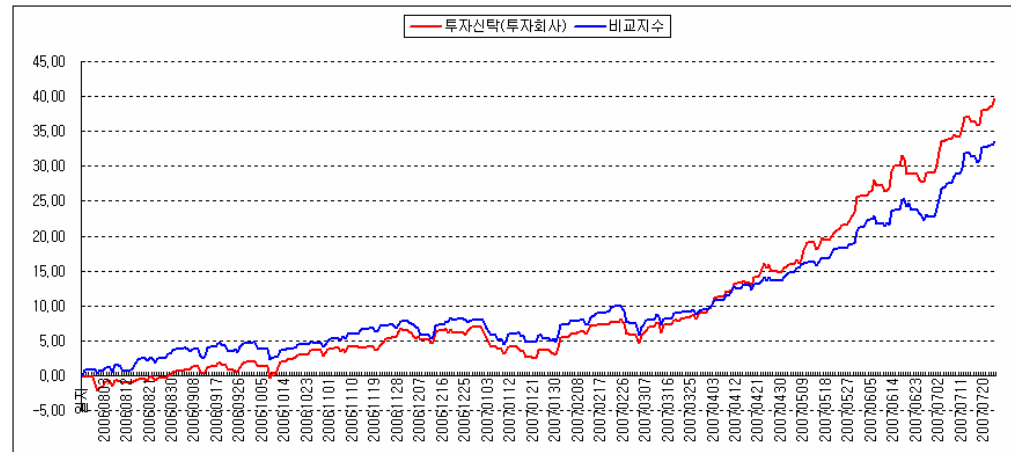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PI X 60%) + (유동성 X 40%)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연도	최근 1년차 2006.07.26 ~ 2007.07.25
투자신탁	39.62
비교지수	33.57

※ 비교지수 : (KOSPI X 60%) + (유동성 X 40%)



※ 비교지수 : (KOSPI X 60%) + (유동성 X 40%)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종류 A: 없음 종류 C: 납입금액의 1%	
	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종류 A: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 없음	
	합계	-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5%	최초 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판매회사 보수	종류 A: 순자산총액의 연 1.2% 종류 C: 순자산총액의 연 0.7%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2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25%	
	기타비용 ¹⁾	순자산총액의 연 0.619%	
	총 보수·비용 비율	종류 A: 순자산총액의 연 2.364% 종류 C: 순자산총액의 연 1.864%	-

주) 기타 비용은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2006년7월26일~2007년7월25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음

<수익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만원)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수익증권	24	74	130	301
종류 C 수익증권	29	68	113	247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2)상기의 종류C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예시는 선취판매수수료(납입금액의 1.0%)를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5.6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V. 매입 · 환매,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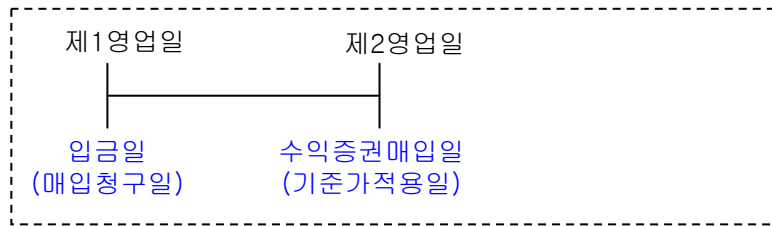
1. 매입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을 신청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매입은 판매회사에서 해당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매입시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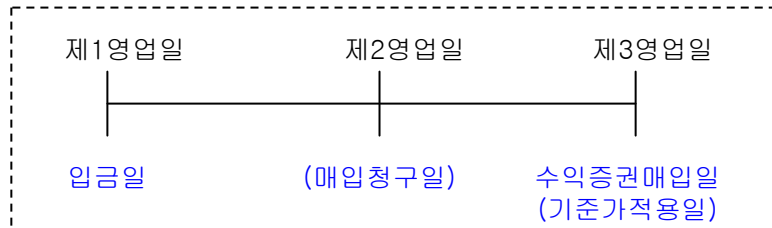
(1) 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3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3) 다만, 최초 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 관련 유의사항’중 ‘1.매입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환매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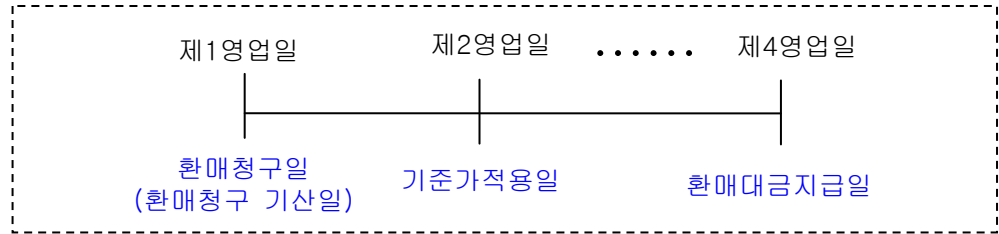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시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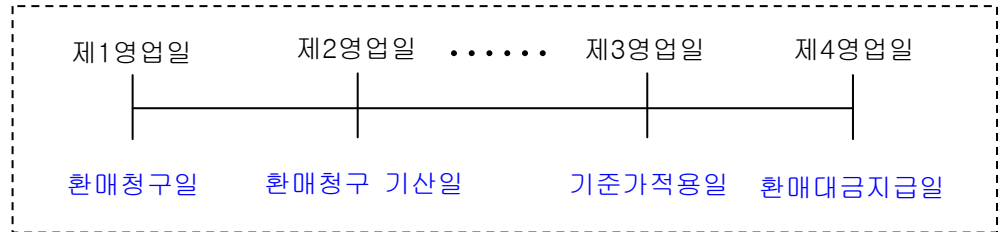
(1) 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오후 3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경과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환매수수료>

- 1.종류 A 수익증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 2.종류 C 수익증권: 없음

환매연기, 부분환매, 환매제한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재2부.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중 '2.환매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 (1)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 (2)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주식운용전략

국내 주식 가운데 철저한 리서치에 근거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주식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배당수익과 함께 시장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 철저하게 분업화된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에 의한 실사 중심의 리서치와 Bottom-up 방식의 기본적 분석에 기초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
- 투자대상 종목 가운데 배당수익률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에 선별 투자
- 단순히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회사 보다는 실적 호전, 보유 자산가치의 상승, PER, PBR 등 상향 가능성이 높아 향후 자본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데 역량 집중
- 보통주와 괴리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고배당 우선주 발굴
- 매매회전율을 낮게 가져감으로써 매매비용 발생을 최소화

■ 채권운용전략

국공채, 은행채 및 신용등급이 높은 유동성자산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금리변동 위험에서 중립적인 운용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매력도 분석에 의한 섹터별 자산배분 및 투자분석에 의한 반영수익 우위에 있는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듀레이션 결정, 섹터 및 종목 선택 등 다양한 수익률 창출 기회를 모색
- 주요 전략별 위험대비 수익분석을 근거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수행

2. 투자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회사는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신탁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60% 이하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②	채권	40% 이하	국채, 지방채, 특수채, 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사모사채권 제외)
③	어음	40% 이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④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⑥	수익증권등	5%이하, (단, ETF는 30%이하)	신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⑦	투자증권의 대여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⑧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합계액이 15%이하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및국채선물옵션
⑨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	채권총액의 50%이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선 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 77 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4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또는 채무증서, 금융기관보증 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채권에 한정)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 것에 한정)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동일회사 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최초설정일 이후 1 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계열회사 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가능)	
후순위채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II.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중개회사 선정을 위하여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및 컴플라이언스팀이 회의를 통해 평가기준을 선정 및 가중치 결정
- ◆평가자는 사전에 정해진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른 각 중개회사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가중치를 적용
- ◆각 평가자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중개회사를 결정한 후 운용 및 컴플라이언스 임원의 승인을 거쳐 거래 시행
- ◆중개회사 평가기준의 선정 및 조정은 분기별로 실시



◆투자자산별 평가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중개회사의 평가기준
투자증권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및 가중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아이디어 제공 2. 자료제공, 세미나 리서치 능력 3. 투자 및 조사 지원, 기업탐방 등 ■ 채권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및 가중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미나 및 제공된 투자정보의 질 2. 관련시장정보의 경쟁력 3. 중개팀의 강약점 4. 분석 방법론 5. 매매체결력 6. 매매주문시 문제해결력 7. 매매에 대한 지원부서의 능력 8. 정기세미나 및 리서치인력의 보유 9. 정기 리서치 자료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및 가중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리서치 보고서 2. 트레이딩 실행 3. 재무건전성 등 ■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채권거래의 기준과 같음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1)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일부 환매>
- (1)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1)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약관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 영업일 전부터(15 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3 영업일 전부터)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현저한 거래부진,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천재 지변 등) 또는 수익자의 이익 또는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매연기사유 및 수익자총회 등의 향후 처리계획을 지체없이 수익자와 판매회사에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통지합니다.
 - <부분환매>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와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고 판매회사는 통지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합니다.
- 3.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상환금등의 지급시기
 -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PCA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타워 15층 연락처: 02-2126-3500
회사 연혁	2001.02 굿모닝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2.10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로 대주주 변경 2004.07 제로인 선정 2004년 상반기 주식형 1위 운용사 2005.01 한경비즈니스 선정 2004년 결산 베스트 주식형펀드 운용사 부문 2위 2005.01 제로인 선정 2004년 결산 주식형펀드 운용사부문 2위 2005.12 머니투데이 베스트 펀드상 수상 -주식형펀드 베스트 운용사 부문

2. 주요 업무

<업무 범위>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무와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업무 위탁>

- 일반사무관리회사

PCA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는 수익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지정하는 사모펀드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회계처리 및 자산운용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2001년 2월 5일부터 “회계처리 대행 및 자산운용정보 제공 계약”을 통하여 HSBC 펀드서비스에 위탁하고 있으며, 본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HSBC 펀드서비스에 해당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당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64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의 책임은 위탁한 자에게 있습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단위:백만원)

요약재무내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07.03	2006.03	계정과목	2007.03	2006.03
자산총계	35,875	20,318	1. 영업수익	25,813	12,635
1. 유동자산	29,499	15,340	2. 영업비용	11,141	8,614
2. 고정자산	6,376	4,978	3. 영업이익	14,672	4,021
투자자산	5,397	4,330	4. 영업외수익	4	1
유형자산	503	452	5. 영업외비용	12	7
무형자산	31	56	6. 경상이익	14,664	4,015
미연자산	445	140	7. 특별이익	0	0
부채 및 자본총계	35,875	20,318	8. 특별손실	0	0
1. 유동부채	8,072	3,351	9. 법인세차감전	14,664	4,015
2. 고정부채	757	492	순이익		
3. 부채총계	8,829	3,843	10. 법인세비용	4,093	1,159
4. 자본금	15,000	15,000	11. 당기순이익	10,571	2,856
5. 이익잉여금	12,046	1,475			
6. 자본총계	27,046	16,475			

4. 운용자산 규모
(일임자산 제외)

(2007. 10. 31 기준, 단위: 억좌)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상품	재간접	총계
수탁고	22,138	4,526	6,175	9,112	6,124	5,560	53,635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개, 기준일 : 2007.11.20)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홍순모	34세	과장	3	300	연세대 경영 주식운용(신영투신 6년6개월, PCA투신07.05~)	팀 운용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의 책임 운용 전문인력입니다.

※ 신탁재산은 팀제로 운용하며,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연락처: 1588-1111
회사연혁	1959.12.01 설립 1999.07.20 판매회사 등록



◆ PCA생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6번지 연락처: 1588-4300
회사연혁	2002.2 PCA 생명 공식 출범 2002.12 우수 외국인 투자기업부문 산업 포상 수상

2. 주요 업무

<업무범위>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수익증권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의무와 책임>

-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 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 ②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⑤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⑥ 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 홈페이지 주소>

판매사	홈페이지 주소
하나은행	www.hanabank.com
PCA생명	www.pcakorea.co.kr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연락처: 1588-1111
회사연혁	1959.12.01 설립 1999.07.20 판매회사 등록

2. 주요 업무

<업무범위>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의무와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HSBC펀드서비스
주 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6층 연락처: 02-3771-9800
회사연혁	2000.03.23 설립

2. 주요 업무

<업무 범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당해 투자신탁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 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의 기준가격 계산업무, 간접투자자산의 신규계약, 추가납입, 일부 인출, 계약해지, 순자산가치의 산정, 순자산가치의 자산운용사, 판매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통보 및 관련 회계처리자료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각목의 업무 외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하여서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운영에 관한 사무
- 간접투자자산의 계산업무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연락처	02-3770-0400	02-399-3350	02-739-3590
회사 연혁	2000. 06. 20 설립	2000. 05. 29 설립	2000. 06. 16 설립
	2000. 06. 29 등록	2000. 07. 01 등록	2000. 06. 29 등록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신탁회사·신탁기간·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자산 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 ③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④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②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 ①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수익자명부> 수익자명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해야 합니다.
- ② 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증권에 관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수익자 명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 나.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 다.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 ③ 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위의 가 와 나 의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의 가나 다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소집절차> ①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 이 기재된 서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수탁회사의 변경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6)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www.pcaasset.co.kr),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광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광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공시 사항 확인 수시공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www.pcaasset.co.kr), 자산운용협회 장소 및 인터넷 주소> (www.amak.or.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명칭 : _____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